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629

발의연월일: 2025. 1. 20.

발 의 자:이수진·송옥주·김준혁

이원택 · 김문수 · 추미애

민병덕 · 장철민 · 김현정

최기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. 그러나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하여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자녀 보육 관련 비과세 혜택의 한도를 월 30만원(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0만원)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3호머목)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호머목2) 중 "20만원"을 "30만원(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 상이 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0만 원)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산·보육 관련 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3호머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12조(비과세소득) 다음 각 호의	제12조(비과세소득)			
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				
세하지 아니한다.			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	
3.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	3			
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				
하는 소득				
가. ~ 러. (생 략)	가. ~ 러. (현행과 같음)			
머.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	머			
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				
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				
급받는 다음의 급여				
1) (생 략)	1) (현행과 같음)			
2)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	2)			
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				
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				
(6세가 되는 날과 그 이				
전 기간을 말한다. 이하				
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				
같다)인 자녀의 보육과				
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				
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	<u>3</u>			

<u>0만원</u> 이내의 금액

0만원(제50조에 따른 기

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

에 해당하는 자녀의 수

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

40만원)-----

버. ~ 처. (생 략)4. · 5. (생 략)

버. ∼ 처. (현행과 같음)4. · 5. (현행과 같음)